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2가단1945 판결 [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2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윤희

별지